

우리 나라 傳統 婚禮와 現代 婚禮에 關한 研究

이 순 자

동신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A Study on Marriage in Yi Dynasty and Modern Times in Korea

Soon Ja Lee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 Dongshin University

目 次

| | |
|------------------|----------------------------|
| Abstract | 1. 婚禮儀式 |
| I. 序 論 | 2. 婚禮服 |
| II. 傳統婚禮 | 1) 新郎服 |
| 1. 婚禮儀式 | 2) 新婦服 |
| 2. 婚禮服 | 3. 가정의례준칙 (家庭儀禮準則)의 내용 |
| 1) 新郎服 | IV. 혼수에 관한 提言 |
| 2) 新婦服 | V. 結 論 |
| 3. 婚姻奢侈禁制에 대한 規定 | 參考文獻 |
| III. 現代婚禮 | |

Abstract

This report aims at studying on marriage extravagancies in Yi Dynasty and modern times in Korea.

The author argues that we have to do the reform of consciousness and our reflection, with regard to the marriage extravagancies in Yi dynasty and modern times in Korea.

In the way, we have to be illuminated by the seminar for the house wives of high class, by the discussion on marriage extravagancies or on the prohibition law of that which can keep.

I. 序 論

우리의 전통문화는 대략 두 가지 흐름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土着的인 것이요, 다른 하나는 外來的인 것이다.

土着的文化는 주로 民俗的인 것에 偏重되어 왔고 外來的인 것은 사상과 학문의 主流를 이루어 왔다.

한국 民族文化의 特徵은 外來的인 要素를 완전히 소화하여 自主의 文化로 調和 融合하여 전승하였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우리의 자랑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傳統은 어느 集團이나 民族이 처해 있는 지리적 條件과 風土, 政治, 經濟 등의 社會的 條件에 따라 思考行動, 生活習慣이 장구한 세월을 통하여 形成되나 繼承하고 反復되는 것이므로 傳統은 社會的 遺傳을 통하여 成立되고 전승되는 社會的 遺産이라고 할 수 있다.

고로 전통은 過去와 現在, 未來로 연결하여 계속 反復, 流動하는 것이므로 過去의 빛나는 전통적 遺産을 올바르게 傳承함과 同時에 「무엇을」 「어떻게」 創造하여 現代와 調和를 이루어 더욱 발전시키느냐에 傳統의 意義가 있는 것이다.¹⁾

사람이 평생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의 儀禮를 시행하고 참가한다.

여러 민족은 각기 전래하는 儀禮規範中 婚禮規範과 그 시행양식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것은 정신문화적인 요소를 깊이 내재한 것이다.

혼례는 二性이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의식으로서 인간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이다.

가족이 社會의 기본단위를 형성하던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혼인이 가족을 형성하는 계기로서 또 가족의 지속성을 위해서 혼례를 소중히 여기고 성대히 거행하였을 뿐 아니라 예사에 충실히 따르도록 하였다.²⁾

本 論文은 傳統婚禮와 現代婚禮를 살펴봄으로써 現代婚禮에서 보이는 過剩消費로 인한 문제, 시댁의 지나친 혼수 또는 치참금에 대한 요구로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킨 病幣를 바람직하고 실천 가능한 좀더 調和로운 해결방안을 연구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나라 婚禮를 연구함에 있어서, 전통과 현대산업사회에 적합한 家庭儀禮의 계지를 통해 傳統文化가 현대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가정의 존속으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과의 조화와 넓게는 국민 화합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傳統婚禮는 朝鮮時代 民家婚俗을 文獻中心으로, 現代婚禮는 최근 實在 행하고 있는 婚禮現狀들을 傳統婚禮의 婚姻奢侈禁制와 現代 家庭儀禮準則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婚禮行事は 자녀에게 일생에 한번밖에 없는 가장 기쁜 행사라고 하는 관념때문에, 자녀를 위해 부모의 자긍심 또는 집안간의 자존심 등의 이유로, 자신의 분수에 넘친 혼례준비를 함으로 인한 가정경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자가 두번에 걸친 婚禮行事を 직접 체험한바, 과분한 혼수에 대한 再考를 하게 되어

1) 高光林, 「韓國의 婚姻研究 (傳統社會의 婚姻奢侈弊害에 關한 研究)」, 和成社, 1990, pp. 1-2.
2) 苟南淑, 裴泳基 共著, 「結婚文化와 禮節」, 學文社, 1994, pp. 268-269.

이 論題에 임하게 된 것이다.

本 論文의 目的은 본 연구자와 더불어 지성인들 자신이 사치혼례에 관해 먼저 자각하고 반성하여 바른 사회 풍토에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II. 傳統婚禮

傳統婚禮에 있어서, 民家婚俗을 中心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民家婚俗이라 하면 왕실의 국혼을 제외한, 정일품 관직에서 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의 혼인 풍속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禮를 중히 여겼던 조선시대에는 一品으로 부터 庶人까지의 혼례 의식을 국혼에 대응하는 민가의 혼례의식으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議婚·納采·納幣·親迎 등의 四禮를 중심으로 한 혼례의식임을 볼 수 있다.

이것은 一品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계급의 차이와 관계없이 민가의 혼례의식으로 동일시 하여 본보기가 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士庶人의 婚禮儀式을 동일시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혼례를 행한 규모와 방법, 절차상의 세부적인 사항은 계급과 생활형편 및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을 것이며, 특히 신분이 낮은 천민들은 혼례의식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리라 생각된다.³⁾

우리나라의 傳統 婚禮儀式, 婚禮服을 다음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婚禮儀式

관혼상제는 예교정치(禮教政治), 예교문화(禮教文化)로 말하여지는 중국에서 비롯한 것으로, 한 집안에서 지켜야 할 가례로 정립된 것은 송대에 주희(朱熹)가 주나라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주례(周禮)」, 「예기(禮記)」, 「의례(儀禮)」 등에 나타나 있는 예법을 관혼상제의 절목으로 종합한 것으로부터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의례는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통적인 통과 의례였다.⁴⁾

조선시대 민가의 혼례절차를 다룬 禮書로는 四禮便覽의 기본을 이루는 朱子家禮, 그리고 國朝五禮儀 및 世宗實錄 17년 2월의 「一品에서 부터 庶人까지의 婚禮儀」에 대한 설명 등을 볼 수 있다.

朱子·家禮와 四禮便覽은 議婚·納采·納幣·親迎의 四禮를 설명하고 있으며, 親迎 이후의 절차로 婦見舅姑·廟見·壻見婦之父母의 禮를 설명하고 있다.⁵⁾

따라서 四禮便覽·朱子家禮·國朝五禮儀·世宗實錄에 나타난 민가의 혼례절차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議婚, (2) 納采, (3) 納幣, (4) 親迎, (5) 婦見舅姑, (6) 見家廟, (7) 壻見婦之父母 등이 있다.

3) 李順洪, 「韓國傳統婚姻考」, 學研文化社, 1992, p. 103.

4) 김영자, 「韓國의 服飾美」(서울: 민음사), 1992, p. 178.

5) 李順洪, 「韓國傳統婚姻考」, 學研文化社, 1992, p. 107.

實在慣行에서의 婚禮節次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반적인 전통혼례로 인식되어지며, 실제로 우리의 어머니 세대까지 행해졌던 혼례의식은 앞서 제시한 禮書에서의 의례와는 좀 다른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중국의 혼례의식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제시되어진 예서의 의례와는 달리, 조선시대 민가(몇몇 사대부는 제외하고)의 실제 관행에서는 우리의 習俗에 맞게 절충되어진 혼례로, (약간의 지방에 따른 차이를 지나면서) 우리 사회의 전통혼례로 뿌리박게 되었다.⁶⁾

1) 實在慣行에서의 婚禮節次

(1) 議 婚

중매인을 통하여 의혼이 시작되면, 간선이라 하여 상대방의 마을에 가서 당사자에 대해 알아 보거나 직접 관찰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궁합을 보았다. 궁합은 낡은 해의 天支로 보는 절궁합과 서로 生年月日時를 맞추어 보는 속궁합이 있어 지방에 따라 나누어 보기도 하며 또한, 지방에 따라 간선을 하기 이전에 궁합을 먼저 맞춰보는 곳도 있었다.⁷⁾

(2) 納 采

혼인이 합의되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다 신랑의 四柱를 보내는데, 지방에 따라서는四星이라고도 한다.

사주를 쓰는 방법으로는, 簡紙를 다섯 칸으로 접어서 중간에다 신랑의 생년·월·일·시를 적어 봉투에 넣고, 겉에 四柱 두 자를 쓴 다음 紅襖에 싸서 신부 집에 보낸다.⁸⁾

혼례 날짜를 적은 渭吉書狀을 받은 신랑집에서는 신랑의 의복 길이와 품을 신부집에 알리는 衣製狀을 보낸다.⁹⁾

(3) 納

납폐는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서와 폐백을 담은 함을 보내는 절차로, 신부 집에서는 笄書를 주며, 대접하여 보내는데 납채와 별로 다름이 없다. 다만 폐백을 보내는 것에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혼례 전날이나 당일의 혼례직전에 간단히 행하는 것으로 親迎에 포함되는 것이었다.

폐백으로 靑色비단과 紅色비단을 보내는데, 혼서와 함께 혼례의 구체적인 증표를 나타내었다.

폐백의 많고 적음은 가정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대개는 두 가지 이상 열 가지 이내로 한다.¹⁰⁾

6) 李順洪, 앞책, pp. 115-116.

7) 李順洪, 앞책, p. 116.

8) 李能和, 「朝鮮女俗考」, 金尙億 譯, 大洋書籍, p. 104.

9) 李家原 監修, 「新·舊 冠婚喪祭」(서울: 三勞文化社), 1987, p. 16.

10) 四禮便覽.

(4) 親 迎

醮禮는 거의 행하여지지 않았으며, 대체로 初行·納幣·奠雁·交拜·合卺·婿見婦之父母·于歸·見舅姑·見家廟의 절차로 되어있다. 즉 납폐가 친영의 절차에 포함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 혼례 전날에 납폐를 먼저하고 초행을 가기도 하였다.

실제 관행에서 행한 친영 절차를 살펴보면, ① 初行 ② 納幣 ③ 婚禮式 ④ 于歸 ⑤ 見舅姑 ⑥ 見家廟 등이다.

2. 婚禮服

의례복식은 의례적인 특별한 날 의례규정에 의해 착용되기 때문에 일상복식과는 다른 의례적인 형식이 갖추어져야 하며 儀式의 내용에 의해 제정된 服飾을 착용해야 하는 것이다.

婚禮服은 통과의례중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쁜 儀禮에 속한 服飾으로 다양한 원색, 여러가지 문양, 다채로운 장신구 등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기쁨을 나타내는 행복을 상징하는 服飾인 것이다.

혼례는 人生一代를 통해서 가장 경사스러운 최고의 禮式이라고 생각하여, 예식의 권위와 영광을 더하기 위하여 신랑이나 신부되는 사람은 비록 벼슬살이를 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조선때의 관복으로 紗帽冠帶, 黑靴로 되어 威儀를 갖추도록 하고, 신부에게도 圓衫, 족두리 등으로 성장을 하고서 혼인예식을 올리게 하고, 이날 하루만은 그 위신을 위하여 말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마치 帝王의 위치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賀禮를 받는 형식을 취하여 이런 服飾을 마련하여 입도록 하였다.

그러나 가정 사정에 따라서 조상이 관직에 있는 사람의 집이 아니면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전래하는 冠帶가 없는 민가에서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보존하는 관대를 賁物로 차용하였다.¹¹⁾

1) 新郎服

혼례 때 신랑은 사모(紗帽)에 홍배달린 단령을 입고 목화를 신는다.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우왕 이전까지는 백관복으로 주로 복두를 사용했고 고려말 우왕 때에 명나라 제도를 따르게 되어 사모와 단령을 사용하게 된 것이 조선말까지 계속되어 신랑의 예복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혼례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이와 같은 호사를 일반에게도 허락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¹²⁾

혼례복으로 보통 바지·저고리·조끼·마고자 위에 중치막이나 두루마기를 입고, 官服·각띠·紗帽를 쓰고 木靴를 신었다. 이 때의 官服은 雙鶴 胸背를 단 藍色의 관복이었다. 紗帽冠帶는 주로 문층의 것을 빌려 입거나 마을 공동의 것을 빌려 입었다. 그러나 준비 못했을 경우는 바지·저고리·조끼·마고자 위에 두루마기만을 입고 혼례를 하기도 하였으며, 또 이 위에 道袍를 입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가난한 경우는 바지·저고리만을 입고 하기도 하였다.¹³⁾

11) 李順洪, 앞책, p. 336.

12)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 pp. 180-181.

13) 李順洪, 앞책, 1992, pp. 336-337.

조효순은 혼례복에 착용하였던 것은 당상관의 관복인 붉은색이라¹⁴⁾ 하였고, 유송옥은 혼례복으로 남[복청]색 관복을 입고 각띠를 띠고 그 집안 벼슬과 품계에 따라 그것에 맞게 흉배를 달았다¹⁵⁾고 하며, 또한 신랑 예복의 흉배는 당상관과 같이 雙鶴의 흉배를 달았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혼례복 단령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결국 한가지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즉 혼례는 人倫之大事로 혼례날에는 백성으로서의 가장 큰 盛裝이라 할 수 있는, 당상관의 복장인 홍단령의 雙鶴胸背 착용이 허용되었으나 일반서민에게 있어서 감히 당상관의 복장을 착용한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혼례복으로는 청단령을 착용하였고, 흉배 역시 관복의 착용에서 문무관의 常服으로는 홍단령에 雙鶴(또는 雙虎), 청단령에 單鶴(單虎)의 흉배가 원칙이나, 혼례시에는 문관의 흉배문양인 쌍화 또는 단학흉배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는 문무관의 집안에서는 그 집안의 품계에 맞는 흉배를 착용했을 것이다. 결국, 일정한 원칙이나 규칙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혼례복의 착용으로 인하여 청단령에 쌍학흉배를 부착한 혼례복 착용이 최근까지에도 실제로 많이 착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¹⁶⁾

또한 공통적으로 입는 복식 이외의 것을 지방별로 살펴 보면,

강원도 지방에서는 紗帽를 쓰나 幘頭를 쓰는 경우도 있었으며, 춘천 지방에서는 木靴와 쇠자(수해자)를 같이 신었다.

경상도 안동 지방에서는 사모에 紫團領 紫細창의를 받쳐 입고, 犀帶에 雙鶴 흉배를 하는 것이 제격식으로 당상관에 해당하는 차림이었다.

경상도 진주 지방에서는 婚俗으로 여름이라도 바지말기에 솜을 아주 조금 얇게 두는데, 이것은 방법으로 둔다는 說과 시집살이가 되니까 모든 것을 덮어 가지고 잘 살라는 뜻의 2가지 說이 있다. 조끼를 안입는 경우도 있었으며, 활옷(서울지방의 團領, 즉, 官帶를 뜻함)을 못입는 경우 큰옷이라고 하는 도복(道服)을 입었다. 이 도복이 있는 집에서는 신랑의 예물로 가져갔다. 겨울에는 휘황을 쓰고 그 위에 사모를 쓰거나 복건 위에 사모를 썼다.

제주도 지방은 관복을 사용하였으나, 혼례를 치르고 나면 성인이 된 표시로 입는 큰옷, 즉, 도포는 예복으로 사용하였다.¹⁷⁾

2) 新婦服

신부의 혼례복은 다홍 치마에 노랑 저고리나 연두색 삼회장 저고리를 입고 치마를 입으며 그 위에 원삼이나 활옷을 입는다. 소례복으로 당의를 입거나 쪽진 머리에는 용잠이나 봉잠을 하여 큰 댕기를 뒤에 두르고 앞에는 앞댕기를 늘이고 족두리나 화관을 썼다.¹⁸⁾

빨강치마에 노랑이나 연두저고리를 입는 것이 어느 지방이나 공통적인 것이고, 그 위에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하는 것이 신부의 상징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삼은 어느 지역이나 그 형태는 연두색 길에 색동소매를 달아 만드는 것으로, 보통 문중에서 빌려 입었다. 그러나

14) 조효순, 「韓國服飾風俗史研究」(서울: 一志社), 1989, p. 364.

15) 유송옥,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1991, p. 238.

16) 李順洪, 「韓國傳統婚嫁考」, 1992, pp. 323-324.

17)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第十七冊, 1986.

18) 「한국민속대관 I」, p. 231.

圓衫을 준비 못했을 경우 죽두리를 쓰고 큰 땀기를 들이고 치마·저고리 위에 汗衫만 늘어 뜨리기도 하였으며, 치마·저고리만 입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겹저고리를 입었는데 이것을 합쳐 三作저고리라 했으며, 겹치마 속에는 藍色의 속치마를 입었는데, 이는 陰과 陽이 숨을 이룬다는 뜻이 있다.¹⁹⁾

활옷에는 다홍색 비단에 장수와 길복을 의미하는 물결, 바위, 불로초, 어미鳳, 호랑나비, 연꽃, 모란꽃, 동자(童子) 등의 수(繡) 이외에 이성지합(二性之合), 만복지원(萬福之源), 수여산(壽如山), 부여해(富如海) 등의 글씨를 수놓았으며 수구에 한삼을 단다.²⁰⁾ 이 옷은 고려시대에는 왕비복이고 조선조에는 공주나 왕비의 대례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서민들의 혼례복에 단 한번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또한 안감은 남색으로 받쳐, 이는 음양의 이성지합의 의미가 건곤의 합을 상징하는 미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즉 건의 이치(乾道)는 남성을 이루고, 곤의 이치(坤道)는 여성으로, 이 두 기운이 융합함으로써 만물을 창조하며 생성하고 만물은 스스로 무궁하게 변화해 간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말한다.²¹⁾

활옷의 여러 가지 문양은 각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1) 蓮 花

활옷의 뒷길에 수놓아 있는 것으로 활짝 핀 연꽃과 연실, 연잎을 수놓고 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살면서도 더럽지 않으며, 항상 깨끗하다 하여 그 청결함을 받들어 불심이 세상에 맑게 비친다는 의미이다. 또한 연화문은 건강과 장수, 불사, 군자를 의미한다.²²⁾

(2) 모란 (牡丹)

모란은 富貴의 상징이고 꽃 중의 왕으로 칭송되는데서 연화 위에 여러 송이 수 놓여져 있다.²³⁾

(3) 나비 (蝶)

연화와 연실, 모란의 중앙에는 나비가 수놓여 있다. 나비는 새로운 창조를 뜻하며, 즉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에 나비 그 자체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나비는 인간이 영원을 추구하는 변신의 상징으로서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꽃과 나비의 조화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며 아름다운 女性에게는 男性이 따른다는 뜻을 나타낸 인간 본연의 心理를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²⁴⁾

(4) 봉황 (鳳凰)

봉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새다. 그러므로 봉황은 이상적인 의도의 구성에 의한 鳥形인 것으로 鳳은 至誠의 서용조(瑞應鳥)로서 표현되는데 신성만이 理想鳥라 하니까 하늘

19) 文化公報部文化管理局, 叢書, 第十七冊, 1986.

20) 「한국민속대관 I」, p. 231.

21) 장중위엔 마리우 지음, 박일 옮김, 「황금꽃의 비밀」, 정신세계사, 1986, p. 82.

22) 백영자, 「한국의 복식」, 1993, p. 460.

23) 백영자, 叢書, p. 460.

24) 백영자, 叢書, p. 460.

의 사상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鳳凰紋은 德과 仁, 信, 正을 상징한다.

이 봉황은 특히 왕비, 공주의 문양에 상징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²⁵⁾

(5) 십장생 (十長生)

10가지의 고귀함을 바탕으로 오래 살든지 없어지지 않는 물건을 상징하며 日, 雲, 鶴, 松, 竹, 鹿, 石, 龜, 不老草를 즐겨 생활에 신조로 삼았다.

鶴은 품격이 고귀하고 오래 산다는데서, 구름은 천지만물이 조화를 가져다 주는 이상에서, 바위는 자연의 견고하고 믿음직함과 불변한 것에서 그 높고 귀한 의미를 가지며, 이 모든 것은 인간최고의 목표인 '오래산다'는 장수의 염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雲紋은 길상의 의미로, 水波紋은 유동하는 곡선의 부드러움을, 芝草紋은 불사초의 의미로, 산악문은 불변의 믿음직한 자연의 의미로 높고 귀함을, 색에 있어서도 우주간을 운행하는 5원 소인 오행을 중심으로 하는 음양 오행 사상의 색채 관념이 표현되고 있다.²⁶⁾

(6) 童子·祈願文

동자는 多男의 상징으로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바라는데서 동양고대로부터의 문양이다. 활옷은 착용하는 이의 간절한 염원을 볼 수 있다. 활옷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길상적인 문양을 수놓아 인간의 염원을 그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활옷의 문양에서는 자연주의 사상과 유교사상에서 배출되어진 현세주의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장수하고 자손이 번창하기를 원하는 조선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²⁷⁾

(7) 원앙 (鴛鴦)

활옷에 원앙 한 쌍이 잔잔한 물위에서 속삭이는 듯한 다정한 모습의 도안이다. 이것은 일종의 遊水類에 속한 물새로서 모양은 오리와 비슷하나 대부분 꽃과 같은 水草에서 한쌍을 이루어 노는 장면 등으로 표현되었으나 다정한 부부의 상을 비유한 것으로 본다.²⁸⁾

(8) 기원문자문

백복을 원한다든지, 이성의 합을 나타낸다는 발원문이다.²⁹⁾

혼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을 받으며, 이 날만은 신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의복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에서 혼례복의 구성을 통하여 한국인의 가장 즐겁고 행복한 미적 표현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의복의 색이나 문양 그리고 장신구 일체가 바로 한국 복식의 즐거움의 표현으로 이루어진 미적 측면이라 생각한다.³⁰⁾

3. 婚姻奢侈禁制에 대한 規定

조선왕조가 家禮를 숭상하여 喪祭禮를 중시하며 여기에 대하여도 많은 禁制가 나와 있지만

25) 백영자, 앞책, p. 460.

26) 백영진, 앞책, p. 460.

27) 백영자, 앞책, p. 460.

28) 백영자, 앞책, p. 461.

29) 백영자, 앞책, p. 461.

30) 김영자, 『韓國의 服飾美』, 1992, p. 182.

禁制 중에서 가장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이 혼인사치의 禁이다. 이 禁令에는 帶銀禁 紗羅綾緞禁 制 油蜜果 宴飾禁制 饌品禁制 佩物禁制 等 조선왕조시대 말까지 이에 대한 禁制는 그치지 않는다.

혼인사치는 국혼 가례 吉禮를 통하여 그 사치성이 높아지고 사대부에서 이를 본받고 나라의 큰 폐가 된 것이다.

조선왕조 중엽에는 딸 셋을 여의면 기둥이 뽑혀진다는 속담이 유행할 정도이었다. 조선왕조시대 말에 이르러 純宗嘉禮 때에는 이불 5百 여벌을 하는 등 사치가 極했는데, 앞서 英祖代에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國婚定例」까지 내려 鄉織使用을 권장했으나 실효를 보지 못하였다. 이는 거듭 거듭 내렸던 금지령이 증명하는 바이다.³¹⁾

1) 太祖三年 六月 의복혼인사치금지

太祖가 집권 후 얼마 안있어 太祖三年 六月에 의복 혼인 사치 禁制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 禁制 속에서 혼인사치를 규제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太祖三年 六月에 都評議使司에서 禮曹가 자세히 정한 狀啓를 준비하여 말하기를, “임금께 올리고 儀式에 쓰는 외에 신하는 金을 쓰지 못하게 한다. 兩部外에 紗羅綾綺 玉纓子 環子를 사용치 못한다. 嘉善以下 六品以上은 酒器 이외에는 銀을 사용치 못한다. 品帶 및 臺省員(司憲府, 司諫院의 官吏)의 頂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庶人과 工商과 賤隸는 비록 관직이 있다해도 銀, 絹, 斜皮를 사용치 못한다. 혼인에 있어서도 역시 職의 品階에 따르며 함부로 사용치 못한다.” 하니 王 이에 따르라 하였다.³²⁾

2) 世宗五年 正月

世宗五年 正月에 禮曹에서 狀啓를 올리기를 “여자를 시집보내는 집안의 이불, 요, 옷장식 등이 모두 異方에서 생산되어 본국에서는 그 뒤를 댈 수 없는 물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갖추지 못하는데 구애받아 때를 놓치는 사람이 파다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불과 요 등에는 무늬비단을 쓰는 것을 禁하십시오. 新婦의 복식도 또한 오로지 비단을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집안의 貧富를 헤아려 우리나라에서 나는 굵은 명주, 모시, 綿布를 당연히 사용해야 합니다.” 하니 王은 이대로 따르라고 지시했다.³³⁾

3) 世宗九年 四月

世宗九年 四月에 예조에게 啓하기를 “신부가 시부모에 첫 인사를 드리는 날은, 오로지 기세를 보이기에만 힘을 써서 수레와 말과 종과 수종꾼이 찬란하게 문을 메우고, 술과 안주를 성대히 장만하여 이고 들고 가는 하인의 수가 30여명에 이르며, 신랑집 역시 거기에 맞춰 치르기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 심히 많아서, 가난한 사람은 빚을 내기까지 하므로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饌品은 五星 두가지, 떡 두가지, 三味湯水 세 가지로 모두 일곱 쟁반에 불과하게 하고, 乳母는 1명, 侍婢 2명, 奴子 10명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겠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

31) 李順洪, 앞책, p. 398.

32) 太祖三年 六月, 卷六, p. 5.

33) 世宗五年 正月, 卷十九, p. 2.

왔다.³⁴⁾

4) 世宗九年 十一月

世宗九年 十一月에 사간원, 무사간, 김효정 등이 상소하기를 “혼인에 시기를 잃음은 작은 일이 아니온데, 지금 혼인하는 연한을 정하여 시기를 어기는 한탄이 없게 하였으며, 또 혼인할 때에綾緞을 쓰지 말고 모두 명주와 무명을 쓰도록 令典에 실려 있으나, 풍속이 헛치레를 숭상하여 본국 산물을 쓰기를 부끄러워하므로 혼인의 시기를 잃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有司가 비록 금하려고 하나 어찌 閨門 안까지 다 살필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앞으로는 권내의 복식 외에 신하들의 의복은 金銀의 例와 같이 일질 못쓰게 하여 검소한 풍속을 일으키옵소서.

이렇게 하면 혼인하는 집이 별다른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저절로 시기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³⁵⁾

5) 世祖九年

世祖九年에 사대부 집 혼인과 外方使臣의 褥帳에 綵段을 쓰는 것을 금하였다.³⁶⁾

6) 成宗三年 一月

成宗三年 一月에 <續六典>의 혼인 조목에 “衿褥은 모두 綿紬·綿布를 쓰고 綾綿段子는 쓸 수가 없다. 신부의 衣飾은 집에 있고 없는 것에 알맞게 하고, 반드시 紗羅·綾段을 쓰지 않도록 한다. 昏夕의 拜席은 闕後를 베플 수 없으며, 단지 單席만을 베꾼다. 신부가 처음 舅姑를 뵈는 날의 饌品은 七品을 쓰고, 乳母 1, 侍婢 2, 奴子는 10명에 지나지 못한다.” 하였는데, 근자에는 혼인의 제도가 지나쳐 納綵를 하는 자는 반드시 綵段을 쓰고, 婚夕에는 잔치를 베풀어 賓客을 대접하며, 婿家에서는 綵段·金銀器皿을 函籠에 담아서 먼저 가져가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아니하면 사람들이 모두 웃고 업신여기며, 舅姑를 뵈는 날은 宴饌이 幾十品이나 되고, 지아비의 집에서는 많은 布帛으로 값으니, 다투어 화려하고 사치함을 숭상하여 남보다 이기고자 힘씁니다. 이 때문에 가난하여 辨備할 수가 없어 혼인의 시기를 잃는 자가 있으니, 금후로는 한결같이 <속육전>의 옛 제도에 의하여 禁斷하되, 만일 당상관의 여자는 侍婢 4명, 奴子는 14명을 넘지 못하게 하소서.³⁷⁾

7) 成宗四年 七月

成宗四年 七月에 보면 “... 근래 혼인하는 집을 보면 裝具는 반드시 사치하게 贈遺는 반드시 厚하게, 獻은 풍부하게 하려 합니다. 綾緞 珠翠는 본국에서는 나지 않는데 衾褥帳幕은 이것 아님이 없으니 이는 불가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갈때는 積函이 앞서 가고 신부가 시부모를 뵈 때는 膳羞 絲絡을 등비에 誇示하고, 서로 우세한 것을 경주하니 그렇지 못한 자는 때를 놓쳐 혼인을 그만 두는 자 있으니, 이는 풍속의 잘못됨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금법을 밝

34) 世宗九年 四月四日, 卷三十六, 一, 右.

35) 世宗九年 十一月, 卷三十八, p. 12.

36) 增補文獻備考, 卷一百三十一, 三左.

37) 成宗三年 一月二十二日, 卷十四, 一, 二, 右 左.

척 弊風을 금하여 인심을 바로 하옵소서 …”³⁸⁾ 하였다.

8) 成宗五年 四月

成宗五年 四月에 사헌부에 傳旨하기를 “새로운 벼슬에 처음 부임하는 사람을 侵虜하는 것과 혼인의 사치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大典에 기재되어 있는데도 요즈음 관리들은 이를 금하지 못하고 있으나, 마땅히 그 법을 다시 규명하여 엄하게 금지하도록 하라.” 하였다.³⁹⁾

9) 成宗九年 四月

成宗九年 四月에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혼인 때에는 衣帶와 鞍裝을 모두 분수에 맞지 않는 물건을 써서 보기에 아름답게 하여 재물을 백 가지로 허비하는데, 가난한 사람도 시속에 구애되어 재산을 다하여 준비하므로 혼인이 때를 잃기에 이르니,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집과 혼인을 법보다 지나치게 하는 자를 엄하게 금단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 대로 따랐다.⁴⁰⁾

10) 成宗十三年 二月

成宗十三年 二月에 執義 姜龜孫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혼례는 이미 분명한 법이 있으나 각기 그 품에 따라 법을 어김이 없도록 명했던 바 지금 들건대, 申澣이 韓濶과 約婚하는데 納綵 때 絲金을 쓰고 朱紅色의 函을 紗羅綾緞 15필, 銀一丁으로 채우고 그것을 큰 紅色匹段으로 썼다 하오나 澣이 그 禁制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단지 그 富豪를 과시하려고 가벼히 憲章을 犯했습니다. 청컨대 죄를 심문하여 벌을 주십시오.” 하니 正信 鄭光世가 말하기를, “近日 姜子平이 약혼하는데 段子 一匹로 폐백을 삼고 그 집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가벼히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는데 풍속이 사치를 숭상함이 이와 같은 즉 혼인함에 때를 잃음이 이 때문입니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이는 과연 弊風이다. 사헌부는 그 죄를 다스릴지어다.” 라고 명하였다.⁴¹⁾

11) 成宗二十二年 一月

成宗二十二年 一月에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혼인하는 날에 盛饌을 금하는 법이 이미 세워져 있는데도, 근래에 들건대, 密城君이 桂城君의 혼사를 주관하면서 배설한 饌物이 재도를 넘어서 헛된 소모가 적지 않았다고 하니, 매우 옳지 못하다. 왕자, 왕녀에게 주는 물건도 또한 재도에 넘는다고 한다. 이와 같은데도 금하지 아니하면 앞을 다투어 서로 받아가 뒷날의 폐단을 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任士洪의 집에서도 또한 장차 혼사를 행할 것이라고 하니, 조심하게 하여 제한을 넘지 말게 하라.” 하였다.⁴²⁾

12) 燕山君六年 六月

38) 成宗四年 七月, 卷三十二, pp. 18-25.

39) 成宗五年 四月六日, 卷四十一, 三, 右.

40) 成宗九年 四月二十五日, 卷九一, 三十左~三十一右.

41) 成宗十三年 二月, 卷一百三十八, p. 6.

42) 成宗二十二年 一月八日, 卷二百四十九, 六, 右.

燕山君六年 六月에 사헌부가 아뢰기를 “근래에 富家와 大族들이 허영과 화려함을 서로 자랑하여 婚需와 지장을 극히 사치롭게 하므로, 가난한 사람도 서로 따르려고 하다가 힘이 감당하지 못하면, 마침내 혼인할 시기를 놓치게 되니 폐단이 점차 급하기 어렵겠습니다.

지금부터 채단과 寢具에 紗羅綾緞을 쓰는 사람과 갓의 장식에 金銀珠玉을 쓰는 사람과 갓끈에 珊瑚·瑠璃·明珀을 사용하는 사람과 同牢宴 외에도 油密果를 사용하는 사람과 참람하게 안장을 꾸민 말을 먼저 보내는 사람과 신부가 시부모를 뵈 때, 紗羅綾緞 의복과 金銀珠玉 佩物을 갖추어 주는 사람은, 당상관의 자녀를 논할 것 없이 일체 모두 금단시키되, 어긴 사람은 그 가장에게 제서를 어긴 형률로써 논단하도록 하소서.

혼인하는 집에서는 納采하고, 예식 올리는 날짜를 미리 관부에 알리도록 하여 그날이 되면 吏屬을 보내어 檢察하도록 하고, 吏屬을 보낼 수 없는 곳에는 醫女를 보내어 검찰하도록 하되, 만약 날짜를 알리지 않았다가 뒤에 발각되면 家長 및 그 거주지 관원과 管領을 중한 죄로 논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좃았다.⁴³⁾

13) 中宗三年

中宗三年에 하교하기를, “大臣과 百僚는 이제부터 백성에 앞서 무릇 賓婚의 需用과 衣食의 받들에 있어서 사치를 버리고 검약을 따라, 나의 검소함을 숭상하여 좋은 풍속을 이루게 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셨다.⁴⁴⁾

14) 中宗四年 四月

中宗四年 四月 사헌부에 교지를 전하여 이르기를 “혼인의 사치의 금령은 旣甲에 분명하게 늘 근래에 기강이 희미해져서 사치가 날로 심해지니 빈궁한 士族들은 弊俗에 사로잡혀 미처 준비를 못해서 혼가의 때를 놓치니 밝혀 엄히 금하도록 하라.”⁴⁵⁾고 하였다.

15) 中宗五年 十二月

中宗五年 十二月 성균관생 李敬 등이 올린 상소문을 보면 “우리나라의 제도와 문물은 中華를 모방한 것인데 혼례만은 유독 오랑캐의 풍속을 따르고 있습니다. … 또한 婚娶하는 집안의 服色과 珍羞는 다투어 사치하는 바 재산있는 자는 일시에 많은 돈을 쓰고, 貧者는 역시 그를 흉내 내려다 이루지 못하여 아들 딸이 다 커도 때를 놓치게 됩니다. 이리하여 和氣의 傷함이 이에서 유래합니다. 또한 閹豎들이 妻를 얻는 것은 천지간의 變事입니다. … 중국의 제도를 따르면 혼인의 예는 바로 되고 음양이 순조로와 집니다.” 라는 내용이다.⁴⁶⁾

16) 中宗十一年 十一月

中宗十一年 十一月에 사헌부에서 썬올리기를 “紗羅綾緞은 이미 금령을 내렸으니, 이는 法司에서 당연히 금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혼인은 반드시 밤에 하니 비록 禁亂하러 나가도 지적해낼 수가 없고 사대부들이 각자 그 집안에서 금하고 억제케 하면 자연히 풍속이 될 것입니

43) 燕山君八年 六月八日, 卷四十四, 十五, 右~左.

44) 增補文獻備考, 卷一百三十一, 三左, 四右.

45) 中宗四年 四月, 卷八, p. 39.

46) 中宗五年 一二月, 卷十二, pp. 61-62.

다.” 하니 왕이 교지를 진하여 “혼인시 紗羅綾織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教旨를 만들어 금지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17) 中宗十七年 四月

中宗十七年 四月 집의 李賢輔가 아뢰기를 “사치한 풍속은 국가의 체모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근래에 풍속이 사치스러워 한갓 車馬·衣服 따위만이 아니라, 혼인과 초상·장사 때에도 역시 모두 법제에 지나치게 하므로, 상께서 그런 폐단을 아시고 이미 금단하도록 하셨지만 오히려 고쳐지지 않았습니니다.

사치스러운 혼인도 전일에 금단했지만 실행되지 않으니 이번에 거듭 밝혀야 합니다. 사치가 날로 심해져서 물가가 날로 뛰어나오르니 이리다가는 뒷날에 반드시 지탱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국가의 풍속이 너무 사치하면 위에서부터 검소함을 보인다' 하였으니 마땅히 상께서 절약하고 검소하여야 합니다.

또 혼례 때에 부마 및 부인의 가문에서 쓰는 綿布가 5~6백이 되는데, 인가에서는 5~6백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으므로, 할 수 없이 각 고을에 청구하게 됩니다. 만일 禮文에 있는 일이라면 폐할 수 없지만, 이는 모두 쓸데없는 형식을 차리는 것입니다. 자손을 위한 인정은 상하가 같은 법이니, 만일 평생을 살아 갈 수 있는 일이라면 비록 폐단이 있더라도 오히려 가하겠지만, 이는 하루에 허비하는 것이니, 재감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대부들 집에 혼기가 지났는데도 혼인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은, 필시 資粧을 마련하자 못한 까닭일 것이니 法司가 마땅히 단속하여 살펴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또 李頊이 아뢰기를 “사치한 혼인을 본다면 福城君이 吉禮에는 夫人의 집에서 과람하게 하지 않았지만 金安老의 집에서는 지나치게 사치하여 너무나 참람하였고, 柳泓의 집에서는 安老의 집보다 더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서로가 사치하기를 경쟁한 것입니다. 비록 법으로 금단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사치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보이신다면 자연히 그런 폐단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치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알도록 하겠다.” 하였다.⁴⁷⁾

18) 中宗二十二年 七月

中宗二十二年 七月에 사간원 대사간 鄭應麟 등이 아뢰기를 “심지어는 쌀 한섬의 저축도 없는 士庶人까지도 다투어 사치한 일을 본받아 혼인과 초상·장사에 분수에 지나친 참람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하는 자는 비단과 금옥이 아니면 사용하지를 않고 상사나 장례를 치르는 자는 油蜜果로 차린 성대한 제수가 아니면 제사지내려 하지 않으면서, 다투어 아름답게 보이는 것만을 숭상함으로써 귀한 물건을 부질없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집이 가난하면 제때에 시집가지 못하고 장사도 기한 안에 치르지 못합니다. 폐해가 이치경에 이르렀으니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법식은 분명하게 旣에 실려 있으니, 마땅히 거듭 밝혀 禁抑하여야 할 일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위로는 재해가 거듭 이른 것을 생각하고 아래로는 민생의 가난을 살피시어 감할 수 있는 비용은 감하고 제거해야 할 폐단은 제거하시어, 백성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고 하늘의 재앙을 없애게 해주신다면 더없는 다행이겠습니다.”

47) 中宗十七年 四月十二日, 卷四十四, 三十三 右~左.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다.

“士庶人의 혼인과 상사·장례에 사치가 풍속을 이루고 있는 이즈음 재상가에서 마땅히 먼저 금지하여야 할 것인데도 금지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法司에서 糾察해야 할 것이다.”⁴⁸⁾

19) 中宗二十五年 五月

中宗二十五年 五月에 경언 이임은 아뢰기를, “혼례를 치르는 데 있어 사치 풍조가 만연하여 점차로 검약의 풍속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상께서 하신 일이 매우 꾸밈하고 화려함을 숭상하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그를 본받음으로써 재산을 탕진하여 나날이 빈곤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에 상소의 내용을 보니, 이는 참으로 時弊를 잘 지적한 말이었다.” 하였다. 집의 경언호가 아뢰기를 “이것이 비록 아랫사람이 한 것이라 하더라도, 혼인을 사치스럽게 치르는 일을 상께서 억제하지 않으신다면 그 폐단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큰 폐단은 여기에 지나지 않으니, 유념하시어 통렬히 억제하소서.” 하고, 정광필은 아뢰기를, “사대부의 집안에서 서로 다투어 사치를 숭상하는 풍습은 모두가 조정의 그릇된 습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였다.⁴⁹⁾

20) 中宗三十年 十月

中宗三十年 十月 호조판서 소세양은 아뢰기를, “예사롭지 않은 천변이 며칠 안에 여러번 일어나니 상하 모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잘못과 민간의 고통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하늘과 사람은 한 이치로 통하므로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의 일 때문인 것입니다. 대체로 민간의 곤궁함은 사치때문입니다. 위에서 사치를 숭상하면 아랫사람들도 그것을 본받습니다. 혼인과 집과 의복은 서로 다투어 사치스럽게 하려는 것은 모두 웃사람을 본받아서 힘쓰는 것입니다. 혼인이나 집을 지을 때 급하지 아니하고 도움도 되지 않는 일은 줄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신이 호조에 있을 적에 보니, 비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내년도 예산에서 미리 앞당겨 받아 쓰는 것이 많았습니다. 민간의 폐해가 어찌 적겠습니까. 더욱 줄여야 합니다.” 하고 예조판서 윤인경은 아뢰기를, “재변은 헛되이 생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금년은 농사가 약간 된 듯하지만 해마다 흉년이 들었으니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도, 營繕과 혼인 등이 祖宗朝에 비하여 지나친 것 같습니다. 조종조 때에는 풍년이 들어도 內需司의 물건을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모두 경비를 사용합니다. 대체로 재변은 사람의 일로 말미암아 일어나니 두려워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⁵⁰⁾

21) 中宗三十五年 八月

中宗三十五年 八月 三公에 교지를 전하여 이르기를 “혼인때 사치의 풍습에 있어서 사대부들은 모두 궁중을 본받는다 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는 너무 심한 말이다. 나는 사치한 풍습을 변화시키고자 하여 궁중의 사치풍습을 없애왔다. ...

혼인의 일은 위로부터는 비록 橫看에 의한다해도 夫人 駙馬의 집안에서는 아직도 禁制가

48) 中宗二十二年 七月十四日, 卷五十九, 二十九左~三十右.

49) 中宗二十五年 五月二日, 卷六十八, 十九右~左.

50) 中宗三十年 十月十五, 卷八十, 四十, 右.

이루어지지 않아 變是 폐가 많다. 大抵 풍속을 移易하는 것은 위에 있는 者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안으로는 궁중으로부터 금하고 밖으로는 公卿 大夫에 이르기까지 검소하여 舊習을 크게 變케한 즉, 士庶人은 스스로 본받을 것이다. 外間의 혼인은 사치를 극하여 혼인은 예를 잃고各司의 관원이 모두 노비들을 侵虐하고, 酒食에 돈을 많이 쓰는 까닭에 물건들에 대해 논할 때 비록 立法하여 금지하려 해도 범하는 자들은 적발하지 못하니 司의 堂上提調가 어찌 그들의 일을 듣지 못했겠는가. 이와 같은 관원들을 일일이 엄하게 다스려 可히 弊風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니, 이는 下官뿐만 아니라 司의 堂上提調가 역시 일에 열심하지 않은 所致이니 같이 罷職시킴이 당연하다⁵¹⁾ 하였다.

22) 中宗三十六年 三月

中宗三十六年 三月에 정원에 전교하기를, “오늘 經筵에서 왕자의 第宅이 크다는 것과 혼인에 있어서 사치한 것과 인납 등의 일을 모두 말하였다. 이 뒤로는 이와 같은 일을 못하게 하라는 것을 該曹에 아울러 이르라.”⁵²⁾라고 하였다.

23) 中宗三十六年 二月

中宗三十六年 二月에는 혼인사치를 금단하는 규정을 정했으니 이는 다음과 같다.

- 「大典」의 禮典 婚姻條에 ‘혼인날 밤의 燭燭을 2품 이상은 10자루, 3품 以下는 6자루도 한다.’고 하였고, 그 주에 ‘여자 편의 집에서 같이 한다.’ 하였으며, ‘신부가 시부모를 뵈 積에 술은 1盆, 안주는 5그릇, 따라가는 여자종은 3인, 남자종은 10인으로 한다.’고 하였고, 그 주에 ‘당상관의 딸은 따라 가는 여자종 4인, 남자종 14인으로 한다.’ 하였습니다. 刑典의 禁制條에는 ‘당하관 이하로서 혼인 때에 紗羅綾緞과 麗裝을 사용한 자는 杖八十에 처한다.’고 하였다.

- 「續錄」의 禮典 婚姻條에 ‘王子女의 吉禮 때 本家나 主婚家가 일체의 갖가지 일을 법제에 벗어나게 할 수 없고, 사치하는 것은 일체 금단한다.’ 하였다.

- 거행해야 될 受教와 刑典 禁制條에 ‘혼인 때 紗羅綾緞과 金銀珠玉과 珊瑚·瑪瑙·明珀과 같은 무릇 사치스런 물건은 당상관의 자녀를 막론하고 일체 금하되, 위반한 자는 그 가장을 제서유위울로 논단한다.’ 하였다.

- 「五禮儀」의 왕자녀의 혼인에 관한 내용 중에 ‘納采와 納幣 때의 饌品은 3가지 果를 넘지 않는다. 종친과 문무관 1품이 하는, 納采와 納幣 때의 饌品은 2가지 果를 넘지 않는다.’ 하였다.

- 혼인하는 집들이 매양 아무 달, 아무 날, 아무의 집이 납채한다는 것과 아무 달, 아무 날 성혼한다는 것을 거주하는 部에 신고하고, 그 部에서 기일 전에 憲府에 牒報하여 書吏를 내보내 摘奸하되, 만일 書吏가 摘奸할 수 없는 데라면 醫女를 내보내 摘奸하게 하고, 납채와 성혼 날짜를 혹시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에 드러나게 될 적에는 혼인한 집안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部의 관원 및 관령을 아울러 推考하여 중한 죄로 논하게 해야 합니다.

- 무릇 혼인할 적에, 납채하고 성혼하고 하는 날에는 禁亂吏를 염려하고 두려워하여 할 수 없이 법제대로 하고는 일체의 금단하는 물건을 혹은 미리 혹은 뒤에 비밀리 보내주는 폐단이 없지 않는데, 士族들 집의 은밀한 일이라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摘奸할 적에는 비록

51) 中宗三十五年 六月, 卷九十三, p. 34.

52) 中宗三十六年 十二月二十一日, 卷九十七, 八左.

지발하지 못했더라도 뒤에 발견된다면 추고하여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 혼인 날에는 둘러싼 손님들에게 잔치 대접을 하지 말고 臨時해서 둘러싸게 하되, 여기는 자는 한갓 주인뿐만 아니라 잔치 술을 마신 손님들도 아울러 죄를 과해야 합니다.

· 집이 가난하여 糶糴을 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빈궁하지도 않은데 혼인할 시기를 놓친 자에 대해서는 각자가 거주하고 있는 部の 관령으로 하여금 그 집의 가장을 신고하게 하여 律에 의해 죄를 주되, 여기는 자는 그 部の 관원 및 관령도 아울러 추고하여 죄를 과해야 합니다.

· 신부가 시부모를 뵈 적에 靑紅錦線衫을 입는 것을 세속에서 숭상하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에서는 쉽사리 마련하지 못하여 본주하게 구득하느라 폐단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정의 형편에 맞추어 입게 하고 靑紅錦線衫은 일체 금단하되, 만약에 금법을 범하면 혼가의 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首母도 아울러 추고하여 죄를 과해야 합니다.

· 왕자녀의 길례 때에 本家 및 王婚家와 종친들이 법제에 벗어나는 짓을 하는 일들은 宗簿寺로 하여금 준례에 의해 금단하게 하고, 또한 헌부에서는 듣는 대로 규찰하게 해야 합니다.

· 大君·諸君·公主·翁主의 가례 때 服飾·衾褥·器皿·幣物·饌品 등을 한결같이 「五禮儀」대로 하도록 하되, 紗羅綾緞과 金銀珠玉을 사용하여 사치스럽게 하기를 숭상하는 자에 있어서는, 담당 내관 및 主婚人의 부인과 부마의 가장 등을 중죄로 논하게 해야 합니다.

· 大君·諸君·公主·翁主의 가례 적에 왔다갔다 하는 使价들에게 紗羅綾緞과 綉絹·明珠 등을 예물이라 하여 주는데, 폐단이 적지 않으니 일체 금단하고 주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에 한번 그런 것을 두는 단서를 열어 놓는다면 그로부터 퍼지는 폐단을 막기 어렵게 될 것이니, 비록 綿布같은 미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일체 금해야 합니다.

· 사대부의 혼인 때에 乳父·乳母·問安·奴婢·新奴婢 등에게 주는 물건은 비록 소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체 금단하게 합니다.

· 「五禮儀」의 내용에 ‘大君·諸君·公主·翁主와 부인의 의복은 모두 명주와 면포로 하고, 예식때 부리는 양편의 노비와 하인들도 또한 명주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상하가 차등이 없게 되고 사치가 매우 외람되게 되었으니, 노비 등의 의복은 다같이 면포로 바꾸게 하고,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된 모든 사항은 아울러 참작하여 재감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⁵³⁾ 하는 것이다.

24) 仁祖元年 九月

仁祖元年 九月에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혼인이란 실마리를 만드는 시작이고 만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니, 반드시 공경함과 절도있는 예절로써 행하여야 되지 복장과 집과 정자 등을 사치하여 아름답게만 보일려고 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임금의 친척집 및 사대부 백성의 혼인의 사치함이 이미 이루어져 구하기 어려운 고질병처럼 되어 있사오니, 금지하고 없애는 법을 엄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禮曹와 사헌부에 명하시어 법제도가 무섭고 혁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시고 만일 법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 가장을 죄로 다스린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上은 이에 따랐다.⁵⁴⁾

53) 中宗三十六年 十二月二十九日, 卷四十七, 十五右~十六左.

54) 仁祖元年 九月, 卷三, 一, 左.

25) 仁祖二年

仁祖二年에 하교하기를, “婚姻·賓客의 需用과 車馬·衣服의 제도에 있어서 儉約하기에 힘써 폐풍을 변혁시킨다면 어찌 다스림을 돕는 한 道가 아니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사치의害는 水火의害보다 심하다.'고 하였으니, 이 한마디 말을 음미해 본다면 또한 족히 경계할 것을 알 것이다. 공경하여 영구히 이를 징계할 것이다.” 하였다.⁵⁵⁾

26) 仁祖二十五年 三月

仁祖二十五年 三月에는 諫院에서 啓 올리기를, “나라의 기강이 해이하여 사치가 습속을 이루어 위로는 士夫로 부터 밑으로는 庶人에 이르기까지 혼인시의 음식·의복은 서로 사치를 숭상하니, 신부가 舅故를 밋는 禮에 있어서는 스스로 定食이 있으나, 饌品 品數는 풍성하고 가득 차니 그 비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청컨대 법판에 命해 일체 금하게 하십시오. 만약 전의 풍습에 따르는 자 있다면 적발하여 治罪합니다.” 하니, 왕이 “이에 따르라.”⁵⁶⁾하였다.

27) 明宗四年

明宗四年에 李彦迪이 아뢰기를, “사치하는 가운데서도 혼인의 비용이야말로 적지 아니한 것입니다. 女家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빗을 내어서 婿家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婿家에서는 눈을 흘기면서 女家에게 마련하기를 責합니다. 谿壑을 채우기 어려워서 여자를 질책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朝紳이 모두 守令과 間師에게 求請하므로 조정의 기강이 떨어집니다. 앞드려 원하옵건대 법부에 신칙하여 무릇 이런 일이 있어서 발각된 자는 엄하게 징계해 다스리게 하소서.” 하였는데, 임금의 이를 아름답게 여겼다.

28) 明宗六年 九月

明宗六年 九月에 헌부가 아뢰기를, “흉년이 해마다 더 심해지는데, 백성들의 사치는 갈수록 더해가고 있으며, 혼인의 폐단도 더 심하여 납채하는 물품이 적은 자는 5~6필이고, 많은 자는 10여 필이나 되며, 혼례하고 잔치할 때는 반드시 金綿을 두른 저고리와 구슬 달린 치마를 입는 등 다루어 사치스럽게 합니다. 신부뿐만 아니라 모든 하객들도 다 그러합니다. 해조로 하여금 옛 條目을 申明하게 해서 일체 개혁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⁵⁷⁾

29) 明宗八年 八月

明宗八年 八月 사간원에서 올린 啓를 보면, “... 법을 세워 지키지 않으면, 법을 세우지 않고 고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婚喪의 사치를 금하는 것은 申明하는 법이 하나 둘이 아니었지만, 法을 우습게 보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혼인하는 집안은 華奢를 극하기를 힘써 納采, 玄纁은 부귀한 집안들이 모두 사라능단을 사용하고, 그 수는 적어도 十匹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舅姑를 뵈을 때의 酒果의 수도 그 법이 있으나 많이 가져 가려 하므로, 그 弊는 드

55) 增補文獻備考, 卷一百三十一, 五, 右~左.

56) 仁祖二十五年 三月, 卷四十八, p.7.

57) 明宗六年 九月十七日, 卷十二, 十六, 右.

디어 女家가 제때에 이르지 못하고 급기야 혼례를 그만 둡니다. ... 이와 같이 심한 것이 또 없습니다. 청컨대 法司에 命해 나누어 규찰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니, 왕이 답해 말하기를 “혼인 華奢의 규찰은 啓에 따르라. ...”⁵⁸⁾ 했다.

30) 明宗十一年 十月

明宗十一年 十月에 간원이 아뢰기를, “경상좌도 절도사 方好智는 일곱 살 된 아들을 영남 지방의 부자와 혼인을 시키면서, 신랑을 보낼 때 쓴 물건을 모두 관청에서 조달하여 몹시 사치스럽게 했으며, 盛婚하고 나서 그 아들을 서울로 올려보낼 때의 행장에는 寶貨가 매우 많았는데, 이는 모두 중국 물건으로 사람들의 말이 倭般에서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탐욕스럽고 더러운 정상을 듣는 자들이 침을 뱉고 더럽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으니, 이런 자를 계속 변방의 장수로 들 수 없습니다. 속히 파면하여 다른 사람들을 징계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소문으로 전파된 말을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는가. 추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오래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⁵⁹⁾

31) 明宗十一年 十一月

明宗十一年 十一月에 헌부가 아뢰기를, “청원부원군 한경록이 비록 매우 가까운 친척이긴 하지마는, 그 자녀를 성혼시키는 것은 한 가정의 일입니다. 상께서 친애하는 정에만 치우쳐 각사를 시켜 모든 시설을 준비하게 하니, 公家의 吉禮와 다를 바 없습니다. 명분을 땅에 떨어지게 하고 等威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습니까? 상께서 친애의 은혜를 배풀어 주신 것이 바로 참람한 죄를 이루어 준 것입니다. 각사에서 준비해 두라는 명을 거두시고, 한경록을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각사가 준비하는 일은 그만 두게 하라. 경록은 추고해서는 안된다.”⁶⁰⁾ 하였다.

32) 宣祖四十年 三月

宣祖四十年 三月에 사간 최유원이 啓 올리기를, “근래에 사치의 弊는 날로 심해져 識者들이 한심하게 여긴지 오래됩니다. 전날 經筵중에 臣이 이미 그 大概는 말씀드렸던 바 임금께서 헌부에 특령을 내려 糾正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기강이 해이해져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이제 途上에서 한 婦女가 朱屋轎를 타고 남녀 前導者들이 街巷을 傾塞하고 紅色紫色 보자기에 이르러서는 泥金으로 그림을 그려 국혼을 僭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前日 臣이 有識한 사람들이 깨우쳐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⁶¹⁾

33) 肅宗四十一年 九月

“근래 閭巷의 사치는 極을 다하여 혼례 때 반드시 慶帳을 사용하는데, 혹은 錦繡로 그것을 한다. 또한 纈皮는 옛날의 禮이어서 오늘날 그것을 부활시킬 수 없고, 玄纁二段으로 하는 國俗은 동일하다. 오직 閭巷의 부자들이 金·銀·珠의 具로써 또는 絲綫之屬으로 函을 채운 다

58) 明宗八年 八月, 卷十五, p. 17.

59) 明宗十一年 十月二十四日, 卷二十一, 四十五, 右.

60) 明宗十一年 十一月二十一日, 卷二十一, 四十四, 右.

61) 宣祖四十年 三月, 卷二百九, p. 8.

음에 그치니, 이보다 못한 者라 하더라도 역시 絢縹으로 하여 서로 誇示하니, 貧者는 무력하여 이것을 변상치 못하니 큰 인륜이 때를 잃고 끝내 妻를 얻지 못하는 者가 있다. 청전대, 이제부터 혼인 때 帳을 사용하는 것과 簾弊가 돌을 넘는 것은 禁條에 첨가하여 一切 금단합시다.”⁶²⁾ 하였다.

34) 英祖九年

英祖九年에 하교하기를 “三代 이후로 人文이 점점 성하고 儀節이 자세히 갖추어졌으나, 近世와 같이 사치한 것은 없었다. 아아! 사람의 부모가 되어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어, 남자가 장가가고 여자가 시집가는 것은 禮의 큰 것이요, 인정의 당연한 것인데, 혹은 過年토록 시집가지 못하고 늙도록 혼인하지 못하니, 그 폐단의 유래는 바로 사치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간략한 婚娶로써 인륜의 큰 것을 이루는 것이 사치하고 크게 하는데 구애되어 그 後嗣를 끊는 것보다는 낫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다.”⁶³⁾

35) 英祖四十年

英祖四十年에 명하여 적의는 중국에서 織造하는 비단을 입게 하고 아울러 그 紋을 금하게 하였다. 하교하기를, “임금도 오히려 草衣·草飾을 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한때의 물건이겠는가? 이 뒤로는 비록 表裏를 싸는 보자기라도 紅絢單袱을 쓰고, 그밖에 싸는 보자기는 모두 紅綿單袱을 쓸 것이며, 무릇 모든 보자기는 金錢紙를 금한다.”⁶⁴⁾ 하였다.

36) 英祖四十五年

英祖四十五年 하교하기를, “사치를 금할 것을 申筋하는 것은 진실로 옳다. 油密果의 예에 의하여 무릇 혼인 때에 唐物을 금하였는데, 綾廣織에 이르러서도 내가 항상 깊이 싫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冠帶와 戎服은 본래부터 雲紋이 있었으며 부인의 圓衫은 常織이 있었는데, 어찌 특히 綾廣織을 燕市에서 구차히 구하겠는가? 이로써 신칙하여 나의 暮年에 더욱 스스로 신칙하는 뜻을 보일 것이며, 이 뒤에 국혼때에 中官과 內人으로서 모시는 자는 모두 면포를 쓰고 絢縹을 금하며 中官과 內人이 슈을 어기는 경우는 모두 중하게 다스릴 일을 일체법을 정하여 시행하라.” 하였다.⁶⁵⁾

37) 大典續錄

大典續錄을 보면, “... 왕의 子女의 吉禮時 本家 및 主婚家는 여러가지 일에 당하여 제도를 지내지 못한다. 사치한 일은 모두 금한다.”⁶⁶⁾ 했고 또 “신부가 靑, 紅, 金線衣를 입으면 首母도 같이 벌을 준다. 大君·諸君·公主·翁主의 嘉禮時의 服飾, 衾褥, 器皿, 幣物, 饌品은 모두 5禮儀 따르다. 위에 反할 때에는 主婚人, 夫人, 駙馬家長을 중히 논한다. 혹 金銀器皿을 사용하거나 혹은 왕래인에게 물건을 줄 때, 紗羅綾緞, 綳, 絹, 綿絢를 사용하거나 혹은 同牢日의 宴

62) 肅宗四十一年 九月, 卷五十六, p. 10.

63) 增補文獻備考, 卷一百三十一, 十, 左.

64) 增補文獻備考, 卷一百三十一, 十四, 左.

65) 增補文獻備考, 卷一百三十一, 十五, 右.

66) 大典續錄, 卷六十三, 禮典, 婚禮.

會外에 油密果를 사용하면 主婚人家長을 범을 금한 것으로 보고 죄를 논한다.”⁶⁷⁾

38) 經國大典 刑典 禁制條

經國大典 刑典 禁制條에, “... 官舍에서나 당하관 이하의 혼인하는 사람이 紗羅綾緞, 屬後을 사용하는 자는 杖 80에 처하며, 士族·婦女·兒童·京妓는 금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다.⁶⁸⁾

39) 新補受教輯錄(英祖十九年)

新補受教輯錄(英祖十九年)을 보면, “納采 때 綵緞 혹은 白金으로 函을 채우는 것을 禁한다.”⁶⁹⁾라고 기록되어 있다.

40) 增補文獻備考

增補文獻備考를 보면 “常民 남자로서 娶妻할 때, 紗帽冠帶를 입는 것을 禁한다.”⁷⁰⁾라고 쓰여졌다.

41) 續大典

續大典을 보면, “士族 婦녀의 服着은 일체 그 남편의 爵品에 의하고, 그 외에 大緞·金繡·鳳釵·金玉釵·珠細·假髮을 쓰는 것을 모두 금하되, 오직 신부는 금하지 아니한다.”⁷¹⁾

Ⅲ. 現代婚禮

일반적으로 결혼이란 남녀 두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적 및 경제적인 결합을 말한다. 가족이 형성되자면 무엇보다도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모든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가족이 창설되고 기존의 가족이 확대되어 나간다.

남녀 두 사람의 결합은 새로운 가족의 출발이라는 점에서 결혼식을 하고 축하해 주며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어떤 점에서는 결혼이란 함께 살며, 성 행위를 독점하고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사회적인 허락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은 부부간의 호혜적인 경제적 의무 관계를 수반한다. 전통적으로 부인은 가사를 돌보고 남편은 가족을 부양하도록 요구되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 결합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합법성이 부여되고 부부는 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결합되며 이 결합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결혼은 개인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다. 즉, 애정 낭만적 사랑 등과 같은 개인적 측면도 있지만 결혼이라는 공적인 의식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성립을 알리며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권리가 부여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67) 大典後續錄, 卷三, 禮典, 禁制.

68) 經國大典 刑典 禁制條, p. 441.

69) 新報受教輯錄, 婚嫁.

70) 增補文獻備考, 卷一百三十一.

71) 續大典.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결혼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의무를 달리하게 된다. 과거에는 결혼이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의 획득, 자녀 출산 등 실용적 필요성을 우선시하고 도덕율과 사회규범을 강조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배우자 간의 동료감, 애정, 자아성장 등 개인의 정서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⁷²⁾

이러한 현대에 있어서, 現代婚禮를 다음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婚禮儀式

1) 맞선

결혼 적령기에 도달한 남녀가 부모나 중매인, 소개인의 주선으로 배우자 선택을 위해 미리 학력, 취미, 특기, 직업, 가족상황, 신체조건 및 사진 교환을 통해 상대를 알아보고, 서로 직접 만날 의사가 있을 때 맞선을 보게 된다. 맞선은 이미 중매인을 통해 여러 가지 조건이 어울린다고 판단되어 양쪽이 동의한 경우에 보는 것으로서 직접 만나 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신중하여야 한다.

맞선은 남자편에서 중매인을 통하여 날짜, 시간, 장소를 정하여 연락하는 것이 통례지만 양쪽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연락을 할 수도 있다.

맞선의 날짜와 시간은 맞선 당사자가 편한 시간으로 하되 첫번 만남부터 식사를 하는 것은 서로가 부담스러우므로 식사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장소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아늑하고 조용한 곳으로 하고 복장은 단정한 평상복으로 한다. 지나치게 화려한 옷이나 처음 입는 옷은 신경이 쓰이므로 평소에 입던 옷중에서 선택을 한다.

맞선에는 부모나 형제 중에서 동반하여 의견을 듣는 것도 좋다.

결혼을 전제로 서로가 서로를 좀더 자세히 알고 배우자로서의 선택을 하기 위한 만남이기 때문에 솔직하고 성의있게 대화에 임해야 하겠다.

맞선을 보고 교제기간은 3~6개월이 적당하다.

맞선의 비용은 남자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통례이다. 교제기간 중의 비용도 남자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제기간 중의 비용은 서로 나누어 부담하기도 한다.

교제기간중 서로의 배우자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중매인을 통하거나 직접 거절의 의사를 전달한다. 이 때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2) 약혼식

교제기간을 통해 서로의 배우자로서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약혼을 하게 된다.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알리고 양가의 가족과 가까운 친척 등이 상견례를 겸한 약혼식을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댁의 양해하에 약혼식을 생략하기도 한다.

약혼식은 일반적으로 개식, 신랑 부모, 신부 부모 소개, 신부, 신랑 소개, 가족 소개, 축가,

72) 裴泳基·荀南淑 共著 (1994), 「結婚文化和禮節」(서울: 學文社), pp. 4-5.

예물교환, 폐식의 순서로 진행되며 사주는 예물에 앞서서 전달한다.

최근에 예물은 일반적으로 신랑측에서 신부를 위해 결혼반지와 시계 등의 폐물을 준비한 폐물함과 신부측은 신랑을 위해 결혼반지, 시계 등을 준비한 폐물함을 교환한다.

약혼식 비용은 신부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통례이다.

3) 연 길

신부집에서 사주를 받으면 택일을 하여 신랑집으로 보내는데 이것을 전통혼례에서는 연길이라 하였다.

택일은 신부집에서 하여 신랑집에서 재택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양가가 협의하여 택일을 한다.

택일이 되면 주례 모시는 일, 예식장 결정, 초대장 발송, 예물준비 등으로 바쁘게 된다.

주례는 당사자를 잘 아는 사람중에서 평소애 존경하던 분을 모신다. 주례가 결정되면 당사자는 간단한 선물을 갖고 방문하여 직접 허락을 받도록 한다.

4) 예단 (禮緞)

예단은 新婦가 시댁 식구들에게 고마움과 공경하는 뜻을 표하기 위하여 보내는 예물인 禮幣로 주는 비단이다.

시댁 직계 가족을 중점적으로, 시댁 친척들에게 예단을 마련하여 결혼전에 보낸다.

婚姻奢侈風潮에 대한 문제중의 하나가 시댁 어른들께 보내는 禮緞이다.

일부층의 시댁은 예단에 대한 시댁가족의 불만으로 인해 신부측에서 가슴앓이를 하기도 한다.

신랑측의 지나친 물질, 재정적 요구는 또한 약혼을 파혼에 이르게까지 한다.

가장 축복 받아야할 결혼이 현대적 風潮인 物質萬能의 誇示慾으로 인해 신부측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고, 심지어 고통까지 받게 된다.

禮儀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수단인 것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정성과 존경(尊敬)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례의 표시는 인정(人精)의 표시를 가장 진지(眞摯)하게 그리고 적당하게 표시하는 예의가 되어야 한다.

분수(分數)가 지나치면 형식이 되고 형식이 지나치면 비례(非禮)가 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認識)하여야 된다.⁷³⁾

5) 함

전통혼례에서는 함을 혼례식 당일에 전달하였으나 혼례식에 앞서서 보낸다.

함에는 혼서와 채단을 넣고 채단 위에 물목(物目)을 넣는다.

혼서는 혼서보에 싸서 근봉으로 세번 씌운다.

紅緞은 靑紙에 싸서 紅絲로 동심결을 하고 靑緞은 紅紙로 싸서 靑絲로 동심결을 한다.

청단을 먼저 넣고 홍단을 위에 넣는다.

73) 보건사회부, 「건전한 가정의례」, p. 10.

붉은 주머니에 금이나 백금 쌍가락지를 넣고 혼서를 넣고 뚜껑을 덮은 다음 납페함보에 써서 함띠로 동심결을 하여 함잡이가 신부집에 가지고 간다. 이 때 함잡이가 함 값을 요구하면 신부측에서 함값을 지불한 후 함잡이를 현관 안으로 맞아들인다.

신부집에서는 함을 받을 예탁을 준비한다.

예탁에는 붉은 예탁보를 깔고 봉치시루떡을 시루채 놓는다.

시루위에 청홍보를 덮고 이 시루위에 함을 놓도록 한다.

혼주는 함보를 풀고 혼서를 꺼내어 읽는다.

傳統婚禮에서도 '함잡이'에게 신부측에서 함값을 지불한 후 함을 받는다.

현대에 있어서도 그 행사의 성격은 같으나 함값의 정도와 원래의 함값의 본질이 달라지고 있다. 오늘날의 함값은 과소비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함잡이 무리들의 지나친 요구로 인한 실갱이로 인해 즐겁기만 할 함 들어오는 날, 신부측의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가정 형편상 고가의 함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을 경우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러하지 못할 경우는 피로움으로 닥아오고 급기야는 분노의 결과를 초래한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한 함잡이 행사는 신부측에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하는 축복의 '함'이어야 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내놓을 수 있는 액수이어야 한다.

신부측 입장에서 분수에 넘지 않은 가능한 한도내에서 함잡이들의 술값이어야 한다. 분수에 넘는 지나친 고액은 불쾌감을 더해줄 뿐이다.

우리 서로 자성해야 할 것이다.

6) 결혼식

식 순

개 식

주례입장

양가 혼주입장

점 축 양가의 어머니는 촛불을 켜다.

신랑입장 : 신랑은 능률하게 입장하여 주례에게 가볍게 인사한 후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한다.

신부입장 : 신부는 아버지나 오빠의 팔을 끼고 입장하여 신랑의 인도를 받는다.

신랑 신부 맞절 : 상견례로 주례의 지시에 따라 허리를 45도 정도 굽혀 천천히 절을 한다.

혼인서약 : 가족, 친지 및 내빈 앞에서 결혼 서약을 다짐하는 절차로 주례의 물음에 "예"라고 대답한다.

성혼선언 : 주례가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한다.

혼인신고서 날인 : 주례는 미리 준비한 혼인신고서에 신랑 신부가 날인하도록 한다.

주례사 : 가정생활에 지침이 될 축사.

축 가

신랑신부 내빈께 인사

신랑신부 양가 부모님께 인사

양가 대표 내빈께 인사

신랑신부 행진

폐 식

以上과 같은 순서로 결혼식을 마친 후 축하객에게 선물 또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 폐백

신부가 시가택 가족에게 올리는 첫인사로 현구고례라고도 한다.

시아버지 폐백은 대추를 쓰고 시어머니의 폐백은 육포를 쓴다.

시조부모님이 계시면 폐백은 따로 준비한다.

신부의 폐백 매하는 절은 큰절 4배이지만 시부모님이 두번만 하라고 하시면 두번만 한다.

같은 향렬은 맞절을 한다.

폐백이 끝남으로써 신부는 신랑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전통혼례에 있어서 폐백절은 시댁 식구들에게만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에는 폐백을 마친 후, 사진사의 권유로 친정 부모님도 폐백절을 받는 신풍속도 보이고 있다.

사회상의 변화로 인한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여진다.

폐백복식은 전통혼례에 사용하는 복식으로서, 신부복은 원삼과 쪽두리, 활옷과 화관을 착용하고, 신랑복은 관복과 사모 등을 그대로 사용한다.

2. 婚禮服

결혼 의상은, 원래 의식(儀式)으로서의 그 나라 특유의 풍속이나 관습이 있어서 민족색이 짙은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유럽식의 웨딩 드레스가 국제적인 결혼 의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신부의 예복으로서 원삼을 입어 왔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이 드레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예식이 끝난 후 갈아 입는 옷으로는 한복을 입는 경우도 있지만, 간편한 양장을 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1) 新郎服

結婚式날 新郎의 Fashion도 변신하고 있다.

1995년에는 新郎의 禮服에도 Fashion 바람이 몰려오고 있다. 단순한 style 에서 요즘에는 베스트의 컬러나 패턴이 대담해진 것이 특색이며 개성과 품위가 돋보이는 결혼 예복의 경향이다.

(1) 턱시도 (Tuxedo)

가장 많이 선택하는 블랙 턱시도는 흑색 Bow tie와 함께 착용한다. 턱시도는 no collar 턱시도 또는 shawl collar 턱시도 등이 있다.

최근에는 아스코트 타이와 베스트 색을 동일하게 조화시킨다.

원래 턱시도는 야간에 입는 준예복으로 이 복장이 필요할 때에는 초청장에 보통 'Black tie'라고 복장이 지적되어 있다.

요즘에는 오후 2시 이후의 사교모임이나 결혼식 등에 흔히 입는데, 본래는 6시 이후의 저녁에 입는 것으로 애프터 식스(after six)라는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하다.

턱시도는 검은색 재킷과 바지에 조끼가 있고 재킷의 접은 칼라는 검은 명주로 하고 바지에는 측장을 하며 반드시 멜빵에 검정 보우 타이를 맨다.

더블 턱시도를 입을 때는 조끼를 입지 않아도 되고 싱글 턱시도도 조끼 대신 커머밴드를 맨 수 있다.

턱시도는 미국에서 부르는 이름이며 영국에서는 디너재킷, 유럽에서는 스모킹 재킷이라고 부른다.

구두는 흑색 에나멜화를 신으며 양말은 흑색을 신는다.

모자는 실크 햇이나 오페라 햇이 정식이지만 검은 햄버그를 써도 좋고 여름에는 파나마 모자를 써도 좋으나 요즘은 쓰지 않은 경우가 많다.⁷⁴⁾

(2) 연미복 (Tail coat)

연미복은 정식 야회복으로서 야간의 연회, 음악회 또는 야간 결혼식 등에 입는 정식 예복이다.

연미복은 피크라펠이나 솔칼라로 하는데 제비꼬리같은 날렵한 뒷부분이 신사의 품위를 나타내 준다. 바지는 재킷과 같은 감으로 하며 허리단에 주름을 하나 넣거나 없는 것이 보통이며 바지의 양쪽 솔기에 측장을 단다. 조끼는 홀자락이나 겹자락의 골진 무늬나 다이어몬드 무늬의 천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셔츠는 윙칼라로 하고 가슴 부분에 골이 진 장식의 폴막인 흰 삐께(pique)를 맨다. 소매부리는 더블 커프스로 처리한다.

넥타이는 흰 보타이를 매고 양말은 흑색 양말을 신는데 구두는 검정 에나멜의 슬립온(slipon)을 선택한다.

흰진주로 만든 스테드(stud), 커프스링크를 착용하며 장갑은 새끼양이나 사슴가죽 장갑을 끼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흰색이나 흰실크 장갑을 낀다.

가슴 주머니에는 흰색 포켓치프를 하고 꽃꽂이 구멍에는 카네이션이나 장미꽃을 꽂으면 좋다.

테일코트를 입어야 할 때에는 초청장에 복장의 지정이 'white tie'로 되어 있다.⁷⁵⁾

현대에는 결혼예복으로 사용하고 있다.

2) 新婦服

(1) 웨딩 드레스

신부의 예식복이다. 웨딩 드레스는 싱그럽고 청초하며 경건한 느낌을 주는 순백의 옷감으로 만들어진다. 살을 많이 노출시키지 않는 디자인으로 긴 소매에 드레스의 길이도 full length나 트레인 등이 일반적이다. 개중에는 너무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계절에 따라서는 반소매로 하기도 하며, 길이가 짧은 경쾌한 것을 입은 경우도 있다.

옷감은 순백 일색의 차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화려한 느낌을 주는 호화로운 감을 택한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레이스이며, 공단 등의 소재를 계절에 관계 없이 사용되었다.

74) 裴泳基·荀南淑(1994), 「結婚文化와 禮節」, 學文社, pp. 288-289.

75) 裴泳基, 荀南淑, 앞책, pp. 287-288.

그러나 현대에 있어서 Wedding Dress는 패션디자인의 흐름과 보조를 맞춰 변화해 왔다. 1995년의 우리나라 Wedding Dress의 Fashion 경향은 色相은 純白色이며 style은 단순화되었고, 노출이 대담해졌으며 그 silhouette은 princessline 또는 Bustle style 등의 고전적인 분위기로 Italy 風이다.

옷감의 재료는 공단 또는 망을 많이 사용하며, 주로 봄, 여름은 망을 가을, 겨울은 공단을 사용한다.

올 여름을 장식하는 패션의 유행경향중 하나는 슬립 룩인데, 보다 섹시하고 강렬한 개성을 원하는 신부를 위해 슬립 룩을 나타내는 Wedding Dress가 많이 보이고 있다.⁷⁶⁾

또한 結婚式場의 Garden 활성화로 인한 예식후의 예복으로서 겸 할 수 있는 새로운 design을 한 Wedding Dress를(결혼예복으로서 장식을 떼어 내므로서 예복으로서 착용 가능) 新世代 신부들의 요구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또한 예식을 마친 후 평상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Wedding Dress를 요구하는 新世代 新婦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를 기대한다.

한두개의 기성복 Wedding Dress Brand 'mine'에서 이런 목적의 Wedding Dress를 선보이고 있다.

약혼복에 있어서도 평상복으로 가능한 design을 한 suits, one-piece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중공의 저임금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중공 공장 설치 등 저임금의 생산으로 인한 저가의 Wedding Dress를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wedding 산업체의 등장이 경쟁으로 인한 저가의 고질 wedding dress의 생산을 가능케 하여 소비자가 저가의 고질 Wedding Dress의 생산을 가능케 하여 소비자가 저가의 고질 Wedding Dress를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본다.⁷⁷⁾

결혼날 몇 시간 밖에 입지 못하는 예복 비용을 위해 지나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자는 혼인 사치 방지의 일환으로 결혼예복 준비 비용에 대한 지나친 많은 비용 지출을 줄임과 동시에 이를 예식 하루만을 위한 의복으로서가 아니라, 이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Wedding Dress, 약혼복 등의 디자인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現實的이고 실용성있는 design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많은 idea 개발 연구가 기대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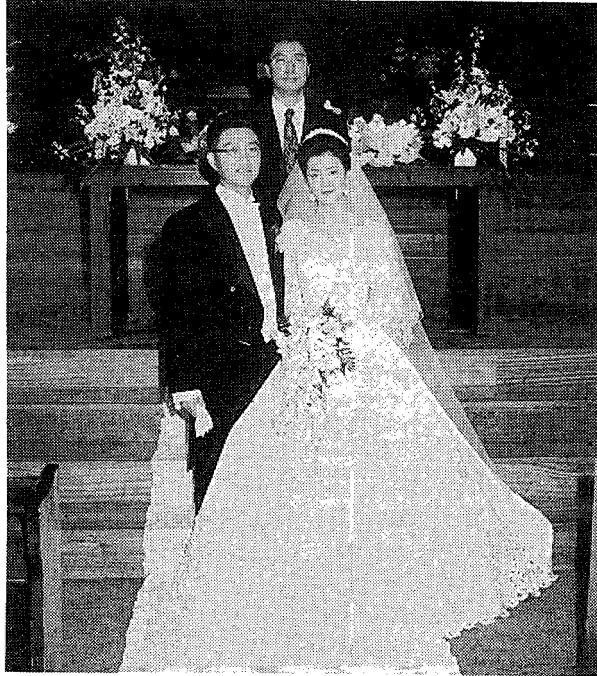
3.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의 내용

가정의례(家庭儀禮)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예절규범(禮節規範) 중에서도 가정이란 가장 기본적(基本的)인 단위사회(單位社會)의 테두리안에서 가까운 이웃을 모시고 선대(先代)·후대(後代)간, 그리고 가족구성간에 지키고 치루어야 할 의식화(儀式化)된 예절규범을 말하는 것이다.

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 및 회갑연(回甲宴)을 맞아 이같은 예(禮)를 표현하는 격식(格式)과 절차(節次)가 가정의례이며 이는 절대불변(絕對不變)의 것이 아니고 생활양식(生活樣式)이나 가치(價値)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항상 합리적(合理的)으로 변천

76) 李恩淑 室長, 헤원웨딩주식회사 (1995년 6월 10일 대담).

77) 李恩淑, 헤원웨딩.



<그림 1> Wedding dress와 Tail coat.

출처 Wedding Dress, 노비아 (서울: 압구정동).

Tail coat, 텍시도 엘레강스 (서울: 압구정동), 1994년 10월.



<그림 2>

출처 : 官服과 圓衫, 李順子 소장.

(變遷)되는 속성(屬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례(儀禮)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그 시대의 생활상(生活相)에 부적합(不適合)할 경우에는 과거의 방식만을 고집(固執)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模索)해야 할 것이다.⁷⁸⁾

1)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의 입법취지(立法趣旨)와 제정경위(制定經緯)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임을 자랑하여 왔다.

이것은 고대(古代)로부터 우리 민족이 얼마나 예의를 숭상(崇尙)하는 국민이었는가를 단적(端的)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지나치게 예의를 숭상한 나머지 그 예의에 얽매어 의례의 참 뜻을 망각하고 그 표현수단인 의례의 행사(行事)만을 고집하는 폐단(弊端)을 가져 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친 구습(舊習)에 얽매어 가풍(家風)이다 권위(權威)다 등등으로 가정의례를 맹목적(盲目的)으로 답습(踏襲)해 오는 과정(過程)에서 그 폐습(弊習)이 사회의 발전과 근대화(近代化)를 가로 막았던 원인(原因)이 되었다.

이와 같은 폐습은 배타적(排他的)이고 체면치레에만 급급한 허세(虛勢)의 소산(所産)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결과적(結果的)으로 현대 사회 생활에 많은 지장(支障)을 주고 있는 것이다.

알맹이 없는 체면치레와 무리한 형식은 커다란 낭비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아름다운 사회미풍(社會美風)은 점점 퇴색(退色)하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가정의례에 있어 허례허식을 일소(一掃)하고 의식절차(儀式節次)를 간소화(簡素化)하여 건전한 사회기풍(社會氣風)을 조성(造成)하기 위해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을 제정(制定)하여 실시하고 있다.

가정의례를 법으로 규제(規制)한 것은 1969년 1월 16일 제정공포(制定公布)한 가정의례준칙(家庭儀禮準則)에 관한 법률(法律)로부터 비롯된다.

이 법률은 극(極)히 권고적(勸告的), 훈시적(訓示的) 규정으로 강제규정(強制規定)을 두지 않고 있어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어떤 제재(制裁)나 처벌(處罰)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생활(私生活) 영역(領域)중 가장 보수성(保守性)이 강한 가정의례를 시대의 변천에 부응(副應)되도록 합리화 하기란 어려운 문제였고 사실상 그 실효(實效)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1973년 당시 크게 사회적 지탄(指彈)의 대상(對象)이 되고 있던 낭비와 허례허식 행위(虛禮虛飾行爲) 6가지를 금지사항(禁止事項)으로 명문화(明文化)하고 의례식장(儀禮式場) 등의 영업허가제(營業許可制)와 벌칙규정(罰則規定)을 둔 강제규정(強制規定)으로 개정(改正)하여 운용(運用)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많은 부분(部分)의 비례(非禮)와 허례허식이 크게 개선(改善)되어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成果)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부 법정금지사항(法定禁止事項)은 서민생활(庶民生活)의 불편과 미풍양속(美風良俗)의 저해요인(沮害要因)이 되어 왔으며 비금지분야(非禁止分野)에서 일부사회지도층

78) 보건사회부, 「건전한 가정의례」, pp. 9-10.



<그림 3> Wedding dress와 Tail coat
출처 : 혜원웨딩 (서울: 서초동), 1995년 5월.

(一部社會指導層) 또는 부유층(富裕層)의 과시적(誇示的) 허례허식풍조(虛禮虛飾風潮)로 국민계층간(國民階層間)에 위화감(違和感)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폐습이 야기(惹起)됨에 따라 법령상(法令上)의 불합리한 점을 조정(調整)·보완(補完)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의례를 효율적(效率的)으로 보급(普及) 실천(實踐)하고자 1980년 12월 31일 개정, 시행하였고, 1985년 3월 30일 동 시행령을 재차 개정하여 서민의 불편해소에 주력하였다.⁷⁹⁾

2) 가정의례준칙 (家庭儀禮準則)

가정의례준칙은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절대적인 강행성(強行性)이 수반(隨伴)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각자의 양식(良識)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권고적(勸告的)이고 훈시적(訓示的)인 천명규정(闡明規定)이며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인 것이며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처벌 받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本 論文의 論題가 婚禮에 관한 것이므로 혼례에 관한 가정의례준칙 만을 채택한 것이다.

79) 보건사회부, 「건전한 가정의례」, pp.11-13.

(1) 혼례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니 만복의 근원이 되는 인간대사(人間大事)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의식절차는 엄숙하고 정중히 행해져야 할 것이다.

약혼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호적등본과 건강 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를 작성 교환함으로써 행하되 약혼식은 따로 거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혼인식을 거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① 혼인식의 장소는 당사자 일방의 가정, 공화당이나 허가 받은 결혼예식장, 기타 적당한 장소로 한다.

② 혼인신고는 혼인식장에서 혼인신고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토록 한다.

③ 혼례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고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그리고 혼인에 있어서 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며 「함쟁이」를 보내는 행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결혼전날 밤에 신랑 친구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함」을 지고 신부 될 사람의 집골목을 누비면서 돈을 뜯어 내는 폐습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신행은 혼인 당일에 하고 혼인식순, 혼인서약, 성혼선언의 요령 등은 별지로 정하여 그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⁰⁾

IV. 혼수에 관한提言

朝鮮時代に 있어서 婚姻奢侈規制에 대한 수많은 規定을 살펴본바, 李太祖 이후 역대 왕들은 당시 직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혼인시의 국민의 사치, 낭비, 허례, 허식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자, 갖은 수단방법을 다 썼다. 그러나 국민의 과분한 弊風은 그치지 않았다.⁸¹⁾

결국 啓를 올리면 으레히 임금은 이에 따르라고 명하지만 실지 효과는 없어 백성들의 폐습은 계속되지만 하였다. 그 원인은 당시의 사직당국의 통치력이 미약했고 무능력했던 탓으로 볼 수 있다.⁸²⁾

이상과 같이 朝鮮時代 백성들의 사치와 낭비의 弊習은 끊임없이 이어져 흘러왔고 識者나 司直當局은 이를 금하고, 혹은 억제하려 했지만 통치력 부족, 지배계급의 腐敗와 무능 등 제반 조건으로 인하여 임금의 命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물론 지배계급의 무능에 못지 않게 피지배계급의 허영과 몰지가 때문에 혼인사치의 금제는 有名無實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⁸³⁾

現代에 있어서, 결혼은 위협한 정도로까지 물질적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람들이 일정 정도의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기가 오늘날 만큼 힘들었던 시대가 없었다. 현대에는 인간다운 생활과 생의 향락을 추구할 권리가 정당하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어 자신들에게

80) 보건사회부, 「건전한 가정의례」, p. 20.

81) 李順洪, 「韓國傳統婚姻考」, 1992, p. 406.

82) 李順洪, 앞책, p. 410.

83) 李順洪, 앞책, 1992, p. 414.

동등한 권리가 주어져 있다고 확신하는데,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느끼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

현재 우리의 사회 조직과 남녀 관계하에서는 여성들이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 결혼에 신경 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혼인과 가정에 관계된 일들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결혼의 이상적 형태인 남녀의 정신적 합일에 의한 결합이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모두 노력해야 한다.⁸⁴⁾

인류가 만들어 놓은 여러가지 제도, 규범, 법, 관습 중에서 영원히 존속할 불변의 제도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다. 이 가정을 이루는 첫번째 일이 바로 결혼인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야말로 인간의 의지로 행하는 행사 중에서 가장 포괄적 자아를 실현하는 초월적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불행한 사람은 결코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인간을 만들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사람을 만든다.⁸⁵⁾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결혼이 오늘과 같은 民主社會的 構造에서 過去의 因襲이 그대로 存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 폐물, 예단, 혼수 등으로 우리의 婚禮習俗이 더욱더 오염되어 심화되어가고, 현대에 있어서 일부층은 심지어 집, 차, 지참금 등 특히 신부측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이러한 婚禮風土가 행복해야 할 가정을 불행한 길로, 또는 파괴까지 하는 일 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혼수와 예단으로 인한 양측 가족의 불화가 결혼전부터 시작되고,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물론 신랑 신부의 애정도 금이 가기 시작한다.

이러한 물질적 마찰이 양가 집안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관계 또는 신혼부부의 애정까지 영향을 끼쳐 행복해야 할 가정이 불행을 초래하게 된 많은 예를 보게 된다.

또한 시대의 지나친 재정적 요구로 인해 충격을 받은 신부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일도 있다.

이와 같은 現實은 우리의 思考가 자신의 분수를 인식하지 못한채 上向志向에만 가치를 두고, 집요하게 그것만을 위해 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傳統的 美風良俗만을 계승 유지함과 동시에 과잉소비적 사치성 혼례의 病幣를 調和로운 문제해결을 모색한다는 것은 容易한 일은 아닌 것이다.

조선시대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 사치성 혼례가 성행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 오늘날까지 혼례사치풍조가 유전되어온 한국인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근성과 의식구조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혼례 사치 문제해결 방안의 지름길은 그 원인상황을 정확하게 把握하여 이에 대한 長期的인 대책을 모색하여 시도해야 할 것이다.

혼례 사치 풍조의 원인을 역사적 사회적 측면에서 관찰하였던바, 一時的인 현상이 아니라 오랫동안 저변에 깔려있는 우리 국민의 가치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가치관의 혼란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인의 새로운 윤리관 또는 의식구조를 확립하기

84) 裴泳基, 荀南淑, 「結婚文化和 禮節」, 學文社, 1994, pp. 186-187.

85) 裴泳基, 荀南淑, 앞책, p. 9.

위한 구체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70년대 이후의 급 경제성장을 통해 相對的幸福論 또는 消費性的 棼으로 인한 拜金主義의 사고를 초래하였다. 이는 結婚이라는 婚禮行事を 통해 특히 잘 나타나고 있다.

현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선망하는 특수 직업을 갖고 있는 일부 남성들은 신부를 선택할 때 결혼 조건을 물질과 재정에 크게 중점을 두어,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가난했던 시절을 보상 받고자 한다.

이와 같이 傳統的 習俗에 現代의 風潮인 物質萬能의 誇示慾이 便乘하여 더욱 弊習이 범람하여 社會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弊習을 改善하기 위한 長期的인 解決策은 끊임없는 教育과 國民精神啓蒙 밖에는 없다. 이에 制度的인 장치를 提議하고 싶다.

모든 精神的 기반의 토대는 教育이라는 土壤위에서 마련된다. 相對的 價値觀의 인식을 위하여 理念의 確立이 있어야 하고, 理念의 確立은 自我의 各성과 可能性을 확신하고 不必要한 劣等意識을 拂拭하는데 있다.

또한 國民精神의 啓蒙이 實질히 요구된다. 「體面」과 「最高」 意識. 남들이 羨望하는 表皮의 이고 單細胞的인 허영심을 拂拭하여야 한다. 中流以下 庶民層에서 問題되는 것이 아니라 上流層 특히 社會指導層의 主導的인 率先垂範이 要求된다. 이를 위한 對策으로 上流層의 婚禮申告를 義務化하고, 호화혼수를 검색하여 犯法者를 嚴罰하는 法則을 制定하여 一貫性 있는 執行의 統一이 요구된다.

아울러 學校나 社會 특히 民間主導的인 運動을 통한 啓蒙과 指導로써 社會不安의 除去와 民族良心의 回復에 따라 拂拭, 淨化되어야 할 것이다.⁸⁶⁾ 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사회에서 고찰한바, 반복되는 수많은 혼인사치 금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현대에 있어서도 계속 양식있는 자들은 부르짖고 있으나 일부 상류층은 여전히 혼례사치를 행하고 있다.

가장 효율적으로 이를 시도하는 방법은 학교나 社會 특히 民間主導的인 運動을 통한 啓蒙과 指導가 바람직할 것이다.

가시적인 儀禮準則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이가는 실천 가능한 儀禮準則을 設定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개몽이 필요할 것이라 사려된다.

그 방법에 있어서, 상류층 주부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통한 의식개혁과 자신들이 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층이라는 개념을 주입 선도하며, TV를 통한 婚姻奢侈規制에 대한 대담과 토론, 각성을 주도하는 특강 등 범국민적인 운동전개가 필요하겠다.

V. 結 論

傳統社會에서 婚姻奢侈禁制規制에 대한 반복된 규제와 오늘날 과도한 일부계층의 奢侈性 婚禮를 통해 우리의 반성과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지난날 우리 사회에서 행하던 혼례의식 절차는 너무나 번거워서 허례허식화 되었고, 지금도 필요 이상의 과도한 혼수마련 등의 사회 폐습적인 낭비로 인하여 가정경제에 파탄(破

86) 高光林, 「韓國의 婚姻研究」, 1990, pp. 133-134.

綻)을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따라서 혼례의식을 무조건 성대히 할 것이 아니라 간결하면서 정중하게 하는 것이 참된 혼례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⁸⁷⁾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婚姻奢侈에 대한 問題解決을 위한 시급한 試圖는 강압적인 행사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效果를 발휘할 수 있는 結果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이를 시도하는 방법은 학교나 社會 특히 民間主導的인 運動을 통한 啓蒙과 指導가 바람직할 것이다.

가시적인 의례준칙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이 가는 실천 가능한 의례준칙을 設定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개몽이 필요할 것이라 사려된다.

그 방법에 있어서, 상류층 주부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통한 의식개혁과 자신들이 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층이라는 개념을 주입 선도하며, TV를 통한 婚姻奢侈規制에 대한 대담과 토론, 각성을 주도하는 특강 등 범국민적인 운동전개가 필요하겠다.

參考文獻

1. 高光林 (1990), 「韓國의 婚姻研究」(서울: 和成社).
2. 김영자 (1992), 「韓國의 服飾美」(서울: 民音社).
3. 朴京子 (1983), 「韓國服飾論攷」(서울: 新丘文化社).
4. 李順洪 (1992), 「韓國傳統婚姻考」(서울: 學研文化史).
5. 趙孝順 (1989), 「韓國服飾風俗史研究」(서울: 一志社).
6. 裊泳基, 荀南淑 (1994), 「結婚文化和 禮節」(서울: 學文社).
7. 백영자 (1993), 「한국의 복식」(서울: 경춘사).
8. 李京子 (1983), 「韓國服飾史論」(서울: 一志社).
9. 柳喜卿 (1975), 「한국복식사」(서울: 梨大出版局).
10. 高福男 (1986), 「韓國傳統服飾史研究」(서울: 一朝閣).
11. 「家庭儀禮大百科」, 韓都文化社, 1983.
12. 金鐘鳴 (1981), 「韓國의 婚俗研究」(서울: 大星文化社), 1981.
13. 李能和, 「朝鮮女俗考」, 金尙憶 譯, 大洋書籍.
14. 이승녕, 「표준국어대사전」, 민중서관.
15. 李家原 (1987), 「新 舊冠婚喪祭」(서울: 三勞文化社).
16. 四禮便覽.
17. 유송옥 (1991), 「朝鮮王朝宮中儀軌服飾」, 修學社.
18.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第十七冊, 1986.
19. 「한국민속대관 I」.
20. 장종위연, 파리우 지음, 박임 옮김 (1986), 「황금꽃의 비밀」, 정신세계사.
21. 보건사회부, 「건전한 가정의례」.
22. 朝鮮王朝實錄.

87) 보건사회부, 「건전한 가정의례」, p. 20.

23. 增補文獻備考.
24. 崔南善, 朝鮮常識.
25. 家庭儀禮大百科, 韓都文化社, 1983.
26. 現代家庭百科事典, 瑞雪出版社, 1983.
27. 經國大典.
28. 新補受教輯錄.
29. 大典續錄.
30. 大典後續錄.